

# -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-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9. 17.

제 출 자: 광진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사항 (제명, 조문) 및 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부처명 정비

- 1)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
- 2) 외교통상부 → 외교부
- 3) 지식경제부 → 산업통상자원부
- 4) 중소기업청 → 중소벤처기업부

#### 나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

- 1) 행정관리국 → 행정국, 자치행정과 → 도시안전과
- 2) 청소년팀 → 아동친화청소년팀

#### 다.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 등 용어 정비

- 1) 계리 → 회계처리, 지참 → 지각
- 2) 장애자 → 장애인
- 3)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, 자 → 사람,

라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

- 1)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
마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신설에 따른 과태료 준용 법령 규정 정비

- 1)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→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바. 개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제명 등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정부조직법」 제26조(행정각부)
- 2)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- 3)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- 4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- 5)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첨부
- 2) 입법예고 : 생략 (§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)

4.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  
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3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-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-

###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**제1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민원사무의” 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처리의” 로 한다.

**제2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」)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” 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” 이라 한다.

**제3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외교통상부” 를 “외교부” 로 한다.

**제4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2조제3항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한다.

**제5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1 중 종합상황실란의 실장을 “행정관리국장”에서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인력 재정동원지원반란의 반장 및 반원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도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**제6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**제7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 중 “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”를 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## **제8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나목 중 “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”을 “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## **제9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## **제10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가목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제9조제1항제3호 중 “청소년팀장”을 “아동친화청소년팀장”으로 한다.

## **제11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**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라 한다.

**제12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물가대책위원회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 위원회”로 한다.

**제13조 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5조제4호 중 “중소기업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를 “중소벤처기업부장 또는 구청장”은 제46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」”을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”으로 한다.

**제14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 중 “중소기업청장” 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 으로 한다.

**제15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다목 중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” 을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” 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“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 중 “「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” 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” 를 “1년이상 장기실업자등 고용노동부장관이” 로 한다.

제2조제4호 마목에서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

바.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

사.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

아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

**제16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 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” 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 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 을 “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 로, 같은 조 제4호 중 “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 중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로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” 을 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로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장애인복지법” 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” 으로, 같은 조 제7호 중 “사회복지사업법” 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 으로, 같은 조 제9호 중 “한부모가족지원법” 을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” 으로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아동복지법” 을 “「아동복지법」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” 을 “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교육장” 을 “서울특별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교육장” 으로 한다.

### **제17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 를 “생년월일” 로 한다.

### **제18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**

**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9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,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, 제4조제2항, 제5조, 제2장 제목,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, 제7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이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, 제8조 제목 및 같은 조 본문, 제9조,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, 제3장 제목,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, 제13조제3항제4호, 제17조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및 제18조제1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6조제1항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목 및 같은 조 본문, 제17조제2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서”를 “성별영향평가서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특정성별영향평가”라 한다.

제12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”를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여성정책 담당주사”를 “여성다문화팀장이”로 한다.

제17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” 을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 으로 한다.

**제20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보육” 을 “돌봄” 으로 하고, 제3조제1호 중 “제2조제1호” 를 “제3조제1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16조제11호” 를 “제52조제8호” 로 하고, 제5조 중 “제2조제1호” 를 “제3조제1호” 로 한다.

**제21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까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 를 “생년월일” 로 한다.

**제22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까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 를 “생년월일” 로 한다.

**제23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

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**제24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지식경제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한다.

**제25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제2항”을 “제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“제3조 또는 제6조”를 “제5조 또는 제8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“별표3”을 “별표4”로 한다.

제3조제9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한다.

**제26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이라 하고,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**제27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10조제3항”을 “제1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**제28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나목 중 “미세먼지”를 “초미세먼지”로 한다.

**제29조 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1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5조 규정에 따라서”로 한다.

**제30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 한다.

**제31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 6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**제32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“주민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**제33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4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소규모공사”라 함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의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

제4조 및 제14조 중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”를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내지”를 “및”으로 하고, “제8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**제34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장애자”를 “장애인”으로 한다.

**제35조 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」의 개정)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수수료액표 1.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란의 다.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의 금액란 중 “「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8조”를 “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”로 한다.

별표 수수료액표 4. 검사란의 가. B형감염 검사의 금액란, 5. 구강보건실진료란의 가. 치아 홈메우기 및 나. 불소겔 도포 수수료의 금액란 및 7. 진료실 진료란의 비급여 대상진료의 금액란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**제36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“정신건강증진센터”를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8조(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〈 신규 조문 대비표 〉

### 1.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조례는 『<u>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』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----- 『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』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<u>민원처리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상위법령</p>

### 2.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)</p> <p>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“광고물 등”이라 한다)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,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,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.</p>	<p>제7조(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)</p> <p>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</p> <p>┌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상위법령</p>

### 3.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행정국) ② 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10. 여권의 몰취, 기타 “ <u>외교통상부</u> ”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	제4조(행정국) ② 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10. 여권의 몰취, 기타 “ <u>외교부</u> ”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 <span style="color: blue;">정부조직법</span>

### 4. 서울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병가)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<u>지참</u> 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	제22조(병가)③ ----- ----- <u>지각</u> ----- -----  <span style="color: blue;">한자어</span>

### 5.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- [별표1]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 합 상 황 실</p> <hr/> <p>실 장 : 행정관리국장                      보좌관 : 총무과장                      반 원 : 각 지원반 대표 7명                      (6급 1명, 7급이하 2명)</p>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 합 상 황 실</p> <hr/> <p>실 장 : <span style="color: red;">행정국장</span>                      보좌관 : 총무과장                      반 원 : 각 지원반 대표 7명                      (6급 1명, 7급이하 2명)</p> </div>

인력·재정동원 지원반
반 장: 자치행정과장 보좌관: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: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직원

인력·재정동원 지원반
반 장: 도시안전과장 보좌관: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: 도시안전과 기획예산과 직원

보급·급식지원반	홍보지원반
반 장: 일자리경제과장 보좌관: 생활보장담당주사 반 원: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직원 새마을부녀회회원	반 장: 정책홍보담당관 보좌관: 홍보담당주사 반 원: 정책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성동교육청 홍보부서 직원 지역방송 대표

보급·급식지원반	홍보지원반
반 장: 일자리정책과장 보좌관: 생활보장담당주사 반 원: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직원 새마을부녀회회원	반 장: 홍보담당관 보좌관: 홍보담당주사 반 원: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성동교육청 홍보부서 직원 지역방송 대표

조직개편

### 6.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조금 등 지원) ③ 보조금의 실적보고, 정산, 검사 및 감독, 불법·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	제7조(보조금 등 지원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 ----- -----

상위법명



<p>나. 「<u>친환경농업육성법</u>」에 따른 <u>친환경인증 농산물</u></p> <p>다.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「<u>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과 위해(危害) 요소 중 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. ~ 바. 생략</p>	<p>나. 「<u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</p> <p>다.----- ----- ----- 「<u>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</p> <p>라. ~ 바. 생략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상위법명</p>
---	--

9.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시설”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,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<u>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이용시설, 청소년상담시설 등을 말한다 2. ~ 3. 생략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「<u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상위법명</p>

10.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③ 생략 가. <u>행정관리국장</u> 나.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다. 교육분야에 종사하거나,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 ① 생략 1. 기금운용관: <u>행정관리국장</u> 2. 기금분임운용관: 교육지원과장 3. 기금출납원: <u>청소년팀장</u>	제5조(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③ (현행과 같음) 가. <u>행정국장</u> 나. ----- 다. ----- ----- 제9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: <u>행정국장</u> 2. ----- 3. -----: <u>아동친화청소년팀장</u> <span style="color: blue;">조직개편</span>

11.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 <u>계리의 원칙</u> )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<u>계리</u> 한다.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</u>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.	제24조( <u>회계처리의 원칙</u> 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계처리</u> 한다. ② ----- -- <u>회계처리</u> 할 ----- ----- <span style="color: blue;">한자어</span>





14.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)</p> <p>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</p> <p>2. <u>중소기업청장</u>이 정하는 전통상점가(이하"전통상점가"라 한다.)</p>	<p>제8조(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</u>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)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<u>중소기업청장</u>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·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)-----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정부조직법</p>

15.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</p> <p>3.“취약계층”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다. 「<u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</u>」에 따른 장애인</p> <p>라. 「<u>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</p> <p>마. 그 밖에 <u>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</u>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</p> <p>4.“사회서비스”라 함은 교육·보건·사회복지·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</p> <p>가. 보육 서비스</p> <p>나. 예술·관광 및 운동 서비스</p> <p>다.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</p> <p>라.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3.“취약계층”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다. 「<u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</p> <p>라. 「<u>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</p> <p>마. ----- <u>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</u> -----</p> <p>4.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나. -----</p> <p>다. -----</p> <p>라. -----</p>

<p><u>마.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</u></p>	<p><u>마.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</u>  <u>바.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</u>  <u>사.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</u>  <u>아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상위법령</p>
--	--

16.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지원대상자) 서울특별시광진구(이하 “광진구”라 한다)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<u>각 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</li> <li>2. <u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</u>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의한 수급권자 등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지원대상자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u>사람</u>에게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</li> <li>2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</u></li> </ol>

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
- 3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과 그 유족
- 4.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
- 5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자
- 6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
- 7.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
- 8. 실업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,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
- 9.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<신설 2008.06.30.>
- 10.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 <신설 2008.06.30>

제3조(지원범위)

①생략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.

- 1.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
- 2. 광진구 예산
- 3.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

제4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제3조

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
- 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과 그 유족
- 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
- 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
- 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
- 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
- 8. 실업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,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
- 9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<신설 2008.06.30.>
- 10.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가정위탁아동 <신설 2008.06.30>

제3조(지원범위)

①현행과 같음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
- 2. 광진구 예산
- 3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의하여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

제4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



18.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위원의 임기)</p> <p>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<span style="color: blue;">의</span>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<u>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 (위원의 임기)</p> <p>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<span style="color: blue;">의</span>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(삭제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보궐위원 임기</p>

19.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</p> <p>서울특별시 광진구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조례</p>	<p>제명</p> <p>서울특별시 광진구 <u>성별영향평가</u> 조례</p>
<p>- 제1장 총칙 -</p> 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조례는 「<u>성별영향분석평가법</u>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수립·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- 제1장 총칙 -</p> <p>제1조(목적)</p> <p>----- 「<u>성별영향평가법</u>」에 따라 -----</p> <p>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에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2조(정의)</p> <p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-----.</p>

<p>1. “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”란 ----- ----- ----- 이하 생략</p>	<p>1. “<u>성별영향평가</u>”란 ----- ----- ----- 이하 생략</p>
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성별영향평가</u>에 관하여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생략 ② 구청장은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----- -----.</p>	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생략 ②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중요 성을----- -----.</p>
<p>제5조(적극적 조치)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 을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함에 있어 참 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<u>성별영 향분석평가</u>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·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 다.</p>	<p>제5조(적극적 조치)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함에 있어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 가</u>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-제2장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실시 - 제6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대상) ① 구청장은 「<u>성별영향분석평가 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</p>	<p>-제2장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실시- 제6조(<u>성별영향평가</u> 대상) ① ----- 「<u>성별영향평가법</u>」 -----</p>

<p>다른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</p>	<p><u>성별영향평가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고려사항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를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생략</li> <li>3.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</li> <li>4. 그 밖에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</li> </ol>	<p>제7조(<u>성별영향평가</u>의 고려사항)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를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행과 같음</li> <li>2. 현행과 같음</li> <li>3. <u>성별영향평가</u> 결과에 ----- -----</li> <li>4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기준에 관하여 -----</li> </ol>
<p>제8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시기)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를 실시한다. 다만,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<u>성별영향평가</u>의 시기)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서의 작성) 구청장은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</p>	<p>제9조(<u>성별영향평가</u>서의 작성 등) -----<u>성별영향평가</u>를 ----- -----</p>

<p>포함된 <u>성별영향분석평가서</u>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----<u>성별영향평가서</u>----- -----</p>
<p>제10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결과의 반영) 구청장은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,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결과를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<u>성별영향평가</u> 결과의 반영)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결과를 -----,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결과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<u>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</u> 반영 등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 소관 정책에 대하여 <u>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</u>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, 구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② 생략</p>	<p>제11조(<u>특정성별영향평가</u> 반영 등) ①----- ----- <u>특정성별영향평가</u>를 실시하고 ----- ----- -----. ② 생략</p>
<p>-제3장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지원체계- 제12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</u>의 설치 및 기능) ①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<u>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생략 1.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.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기준과 방</p>	<p>-제3장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지원체계- 제12조(<u>성별영향평가위원회</u>의 설치 및 기능) ① <u>성별영향평가</u> 제도의 -----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-----. ② 생략 1.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기본방향에 ---- ----- 2.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기준과 -----</p>

<p>법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</p> <p>4. 생략</p>	<p>-----</p> <p>3. <u>성별영향평가</u> 결과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4. 생략</p>
<p>제13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~③생략</p> <p>1.~3.생략</p> <p>4. 그 밖에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④~⑤생략</p>	<p>제13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~③생략</p> <p>1.~3.생략</p> <p>4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에 관한 -----</p> <p>-----</p> <p>④~⑤생략</p>
<p>제16조(간사)</p> <p>① 위원회 간사는 <u>여성정책 담당주사가 된다.</u></p> <p>② 생략</p>	<p>제16조(간사)</p> <p>① 위원회 간사는 <u>여성다문화팀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생략</p>
<p>제17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</u>의 지정 및 임무)</p> <p>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을 <u>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</u>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시기 및 <u>성별영향분석평가서</u>의 작성에 관한 사항</p> <p>3. 제10조에 따른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</p>	<p>제17조(<u>성별영향평가책임관</u>의 지정 및 임무)</p> <p>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성별영향평가책임관</u>으로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생략</p> <p>2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----- <u>성별영향평가서</u>의 -----</p> <p>-----.</p> <p>3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</p>

<p>4. 제18조에 따른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교육에 관한 사항</p> <p>5. 그 밖에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에 관한 사항</p>	<p>결과의 -----</p> <p>4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</p> <p>5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업무의 -----</p> <p><u>성별영향평가</u>에 관한 사항</p>
<p>제18조(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교육)</p> <p>① 구청장 및 해당기관장은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<u>성별영향평가</u> 교육)</p> <p>①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-----</p> <p>-----<u>성별영향평가</u>에 -----</p> <p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상위법령</p>

20.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책임)</p> <p>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방과 후 <u>보육</u>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는데 노력한다.</p>	<p>제2조(책임)</p> <p>-----</p> <p>-----방과 후 <u>돌봄</u>을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3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“아동”이란 법 <u>제2조제1호</u>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“아동”이란 법 <u>제3조제1호</u>의 -----</p>

한다.

2. “지역아동센터”란 **법 제16조제11호**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, 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5조(이용의 대상)

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**법 제2조제1호**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

-----.

2. “지역아동센터”란 **법 제52조제8호**에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이용의 대상)

----- **제3조제1호**의 -----  
-----  
-----.

상위법령

## 21.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장 수 축 하 금 지 급 신 청 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①지급 대상자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주민등록번호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주 소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전화 : 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②가족상황</td> <td>본인과의 관계</td> <td>성 명</td> <td>주민등록번호</td> <td>통거여부</td> <td>직 업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지급계좌</td> <td>예 금 주</td> <td>은행명</td> <td colspan="3">계좌번호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」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(인) (지급대상자와의 관계 : 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광진구청장 귀하</b></p>	①지급 대상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	주 소	(전화 : )				②가족상황	본인과의 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통거여부	직 업											③지급계좌	예 금 주	은행명	계좌번호			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장 수 축 하 금 지 급 신 청 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①지급 대상자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주민등록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생년월일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주 소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전화 : 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②가족상황</td> <td>본인과의 관계</td> <td>성 명</td> <td>생년월일</td> <td>통거여부</td> <td>직 업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지급계좌</td> <td>예 금 주</td> <td>은행명</td> <td colspan="3">계좌번호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」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(인) (지급대상자와의 관계 : 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광진구청장 귀하</b></p>	①지급 대상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생년월일				주 소	(전화 : )				②가족상황	본인과의 관계	성 명	생년월일	통거여부	직 업											③지급계좌	예 금 주	은행명	계좌번호		
①지급 대상자	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(전화 :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가족상황	본인과의 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통거여부	직 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지급계좌	예 금 주	은행명	계좌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지급 대상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생년월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(전화 :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가족상황	본인과의 관계	성 명	생년월일	통거여부	직 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지급계좌	예 금 주	은행명	계좌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

【별지 제1호서식】				【별지 제2호서식】			
<b>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</b>				<b>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</b>			
변경신고자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						
자격변동 사유				자격변동 사유			
사 유	내 용		비 고				
지계비속 사망 (80세 이상 노인)							
지계비속 사망 (호도 대상자)							
주 소 변 동							
기 타							
위와 같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호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.				위와 같이 3세미 가정에 대한 호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.			
년 월 일				년 월 일			
신청인: (인)				신청인: (인)			
광진구청장 귀하				광진구청장 귀하			

개인정보보호법

### 23.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<b>중소기업청장</b>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)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<b>중소벤처기업부장관</b>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정부조직법</p>

24.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점검방법)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온도측정은 <u>지식경제부</u>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냉·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5조(점검방법)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온도측정은 <u>산업통상자원부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정부조직법</p>

25.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<u>제4조제2항과</u>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“가스사업 등의 허가”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<u>제3조 또는 제6조에</u> 따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<u>제6조제2항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“가스사업 등의 허가”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<u>제5조 또는 제8조에</u> --</p>



26.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조례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-----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따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상위법령</p>

27.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지역환경기준의 유지) ①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(생략)</p>	<p>제12조(지역환경기준의 유지) ①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서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상위법령</p>

28.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미세먼지”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.</p> <p>가. 미세먼지(PM-10) :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(<math>\mu\text{m}</math>) 이하인 먼지</p> <p>나. <u>미세먼지</u>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 마이크로미터(<math>\mu\text{m}</math>) 이하인 먼지</p> <p>2.~3.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「나. <u>초미세먼지</u>-----: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~3.(현행과 같음)</p>

29.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철거"라 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규정의 도시계획사업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규정의 공익사업,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「<u>자연재해대책법</u>」 제41조 규정에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45</p>



### 31.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[별지 제6호 서식]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출 입 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80%; margin: 10px auto; text-align: center;"> <p>사진 3×4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5cm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지역자율방재단원증</p> <p>NO. 000      혈액형 O(RH+)형</p> <p>성 명 : 홍길동</p> <p>주민등록번호 : .....</p> <p>소 속 : .....</p> <p>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/div> </div>	<p>[별지 제6호 서식]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출 입 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80%; margin: 10px auto; text-align: center;"> <p>사진 3×4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5cm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지역자율방재단원증</p> <p>NO. 000      혈액형 O(RH+)형</p> <p>성 명 : 홍길동</p> <p>생년월일 : .....</p> <p>소 속 : .....</p> <p>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 font-weight: bold;">개인정보법</p>

### 32.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1호 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위험도 평가단원 등록(말소) 신청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주요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/tr> <tr> <td>성 명</td> <td></td> <td>주민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 속</td> <td></td> <td>직 · 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주소 ( )</td> <td></td> <td>전화 ( 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FAX ( 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E-mail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                 등록분야: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량·터널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속·기타 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방파제·시설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항만 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·전력·통신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본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평가단원(등록, 말소)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               30   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    신    청    인: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213ae-071ae</p>	주요번호		성 명		성 명		주민번호		소 속		직 · 칭		주소 ( )		전화 ( )				FAX ( )		E-mail				등록분야: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량·터널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속·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 <input type="checkbox"/> 방파제·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항만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·전력·통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본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평가단원(등록, 말소)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30    년    월    일 신    청    인:				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				<p>[별지 제1호 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위험도 평가단원 등록(말소) 신청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주요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/tr> <tr> <td>성 명</td> <td></td> <td>주민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 속</td> <td></td> <td>직 · 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주소 ( )</td> <td></td> <td>전화 ( 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FAX ( 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E-mail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                 등록분야: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량·터널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속·기타 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방파제·시설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항만 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·전력·통신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본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평가단원(등록, 말소)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               30   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    신    청    인: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213ae-071ae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 font-weight: bold;">개인정보법</p>	주요번호		성 명		성 명		주민번호		소 속		직 · 칭		주소 ( )		전화 ( )				FAX ( )		E-mail				등록분야: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량·터널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속·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 <input type="checkbox"/> 방파제·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항만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·전력·통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본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평가단원(등록, 말소)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30    년    월    일 신    청    인:				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			
주요번호		성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 명		주민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속		직 · 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소 ( )		전화 (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FAX (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E-mail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록분야: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량·터널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속·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 <input type="checkbox"/> 방파제·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항만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·전력·통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평가단원(등록, 말소)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    년    월    일 신    청    인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번호		성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 명		주민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속		직 · 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소 ( )		전화 (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FAX (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E-mail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록분야: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량·터널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속·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 <input type="checkbox"/> 방파제·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항만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·전력·통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평가단원(등록, 말소)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    년    월    일 신    청    인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33.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(감리) 업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규모공사”라 함은 <u>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</u>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로서 <u>전면책임 또는 부분책임 감리대상</u> 공사로 <u>구청장이 지정하지</u>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</p> <p>2. “감독업무”라 함은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</u>의 규정에 의한 <u>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<u>감리원의 업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</u>」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<u>건설사업관리를 하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「<u>건설기술진흥법</u>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<u>감독자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무를 말한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, 법인,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(생략)  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이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4조(적용의 예외)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----.

제4조(업무의 위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-----  
-----  
-----서울시설공단  
-----  
-----.

제7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(생략)  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심의회 -----.

제14조(적용의 예외) -----  
-----서울시설공단  
-----  
----- 및 제7조 -----  
-----.

상위법령

34.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음주폐해로부터 보호) 1. 알코올 사용 <u>장애자</u> 에 대한 선별, 상담,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2. 알코올 사용 <u>장애자</u> 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	제7조(음주폐해로부터 보호) 1. -----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2. -----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-----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용어정비</div>

35.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수수료액표 1.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다.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「 <u>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</u> 」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2.~3. 생략 4.검사 가. B형간염검사 「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」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	[별표] 수수료액표 1.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다.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「 <u>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</u> 」 제5조----- 2.~3. 현행과 같음 4.검사 가. B형간염검사 「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----- -----

<p><u>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 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함.</u></p> <p>5. 구강보건실진료 가. 치아 홈 메우기 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 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함.</u></p>	<p>5. 구강보건실진료 가. 치아 홈 메우기 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-----</u> <u>-----.</u></p>
<p>나. 불소겔 도포 수수료 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 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함.</u></p> <p>6. 생략</p> <p>7. 진료실 진료 비급여 대상진료 (의과, 치과, 한방) 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 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함.</u></p>	<p>나. 불소겔 도포 수수료 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-----</u> <u>-----.</u></p> <p>6. 현행과 같음</p> <p>7. 진료실 진료 비급여 대상진료 (의과, 치과, 한방) 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-----</u> <u>-----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상위법령</b></p>

36.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-----</p> <p>③ 자살예방센터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<u>정신건강증진센터</u>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<u>정신건강증진센터</u>에 둘 수 있다.</p>	<p>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</p> <p>-----</p> <p>③ 자살예방센터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<u>정신건강복지센터</u>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<u>정신건강복지센터</u>에 둘 수 있다.</p>
<p>제8조(위원회 설치·기능)</p> <p>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<u>정신건강증진센터</u> 정신건강증진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위원회 설치·기능)</p> <p>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<u>정신건강복지센터</u> 정신건강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상위법령</b></p>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 
일괄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비용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해당

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**4. 작성자 :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장은녕(02-450-7297)**